

● 제278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8. 3. 6.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양준욱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387

I. 조례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양준욱 의원(조규영 의원 외 찬성자 13명)
- 나. 제안일 : 2018. 2. 14.
- 다. 회부일 : 2018. 2. 1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적인 회기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호 단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개정안은 탄력적인 의회 회기운영을 도모하고자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의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제안된 것임.

2 안 제8조제1호 단서 관련

- 「지방자치법」(이하 ‘법’) 제44조¹⁾는 지방의회로 하여금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정례회의 집회일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 시행령 제54조²⁾는 제1차 정례회를 매년 5월·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원칙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다만 지방의원의 임기가 6월말로 종료되는 사정을 고려해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는 제1차 정례회를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1) 제44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이러한 지방자치법령의 입법사항에 맞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이하 '조례') 제8조는 1차 정례회를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하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13일 실시됨에 따라, 현행 조례대로 6월 10일 제1차 정례회가 개최될 경우 원활한 의회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움.
- 또한 의회 의결로 9월·10월에 열릴 경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³⁾에 따른 결산서 제출과 결산승인 사이 최소 3개월 이상의 결산승인 지연이 발생하고, 예산편성안을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⁴⁾(조례 제55조의2)등을 고려했을 때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어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 견제 및 균형의 원리가 제기능을 하기 위한 측면에서 정례회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

<표-1> 정례회 집회일 개정에 관한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정례회의 집회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p> <p>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u>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u></p> <p>2. (생략)</p>	<p>제8조(정례회의 집회일)</p> <hr/> <hr/> <hr/> <p>1. <u>따로 정할 수 있다.</u></p> <hr/> <p>2. (현행과 같음)</p>

- 3)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제55조의2(예산안 및 예산집행상황의 제출 등) ① 시장 및 교육감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 및 교육감은 세입예산의 징수현황 및 사업별 세출예산의 집행상황을 반기별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의회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의회운영의 효율화와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종합 의견

- 이상을 종합하면,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원활한 의회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자율과 책임이 따르는 성숙한 지방자치의 상을 구현하는 측면에서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고유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 의결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주요 광역 시·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관련 현황 (2018. 2월 기준)

2018. 2월 기준

시·도	근거 규정
서울	제8조(정례회의 집회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일에 집회한다.
부산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 : 매년 6월 16일.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집회일은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2.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 : 매년 11월 12일
대구	제4조(집회)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셋째 주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첫째 주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2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11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인천	제13조(정례회의 집회일) ① 영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 매년 6월 1일 2. 제2차 정례회: 매년 11월 5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해에는 본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광주	제13조(정례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휴무·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일에 집회한다.
대전	제4조(집회)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개정 2016.10.20.>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5일에 집회한다. 다만,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임시회의 운영은 홀수 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짝수 월에도 개최할 수 있다.
울산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6월 7일에 집회한다. 다만,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2.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11월 7일에 집회한다.
경기	제4조(집회)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셋째 주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7., 2013.11.6.>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첫째 주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2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11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0.20.> [단서신설 2012.7.2.] ③ 임시회의 집회일은 법 제45조에 따른다.

시·도	근거 규정
강원	<p>제3조(정례회의 회기운영) ① 의회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로 나누어 개최하되, 연 2회를 합하여 60일 이내에서 개최한다. <개정 2007.3.2., 2007.11.9.></p> <p>②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토요일인 때에는 그 다음 다음날에 집회한다. 다만, 필요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회일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개정 2015. 3. 6></p> <p>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10월 10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6.7.8.></p> <p>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7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7.3.2., 2008.2.29., 2012.3.9.></p>
충북	<p>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해당 연도에 처음 구성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 3. 30, 2016. 1. 1></p> <p>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8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1. 6. 10, 2012. 3. 30, 2016. 1. 1></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2. 3. 30></p>
충남	<p>제5조(정례회의 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p> <p>②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1월 5일에 집회한다. 다만,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7일 이내에서 집회일을 변경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p>
전북	<p>제8조(정례회 집회일) 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p> <p>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둘째주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이나 10월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16. 3. 25></p> <p>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8일에 집회한다.</p> <p>② 임시회의 집회일은 법 제45조에 따른다.</p>
전남	<p>제4조 (정례회) (개정 2012.12.5)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8. 9. 19, 2012.12.5., 2016.3.10.)</p> <p>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첫 번째 화요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첫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0-8-12, 2006. 9. 27, 2012.12.5., 2016.3.10., 단서 삭제(2016.3.10))</p> <p>2. 대통령 선거 등 국가 중대사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8-12, 2002-7-20, 2005. 3. 24, 2012.12.5></p> <p>3. 삭제(2012.12.5)</p>
경북	<p>제4조(정례회의 집회일)</p> <p>「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개정'08.1.10></p> <p>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단,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집회하되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개정 '10.11.15></p> <p>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6일에 집회한다.<개정'11.3.10></p>
경남	<p>제4조(집회)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6.10.12., 2007.12.27., 2011.02.17., 2013.11.21., 2016.03.31.></p> <p>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첫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01.05.31., 2011.12.29., 2013.11.21., 2016.03.31.></p> <p>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첫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1.05.31., 2005.08.04., 2011.12.29., 2013.11.21.></p>

시·도	근거 규정
제주	<p>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8.10.08., 2011.11.2., 2013.6.5., 2016.4.6.></p> <p>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p> <p>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5일에 집회한다.</p>
세종	<p>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 20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 15일에 집회하며, 이 경우 새로 구성되는 의회가 필요하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와 본회의 의결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 4. 20.)</p> <p>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1일에 집회한다. 다만,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7일 이내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 4. 20.)</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p>